

의안번호	제254호
의결연월일	2024.3.12.

-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-

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3. 4. 임종용 의원 외 2인
- 회 부 일 자 : 2024. 3. 5.
- 상 정 일 자 : 2024. 3. 12.

제298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## 2. 제안설명 요지 [대표발의자 : 임종용 의원]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(2023. 12. 14.)에 따라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결정내역을 반영하고자 함.
- 국민권익위원회의 「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」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구금·출석정지 징계 등을 받을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변경(안 제2조)
  - 기존: 의정자료수집과 연구비 90만원, 보조활동비 20만원
  - 변경: 의정자료수집과 연구비 120만원, 보조활동비 30만원
  
-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(안 제5조)
  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

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김서연)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(2023. 12. 14.)에 따라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결정내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  
- 또한,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(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, 2022. 10. 26)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, 이에 따라 지방의원의 비위행위와 징계처분시 수당 지급에 제한을 두게함으로써 신뢰받는 지방의회 확립과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  
-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# 4. 질의·답변 요지

○ 생략

#### 5. 토론 요지

○ 없음

#### 6. 심사 결과

○ 「원안가결」

#### 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#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